

주주관련 Q&A(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열람등사 청구의 건)

A주주님이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열람등사 청구'의 건을 요청하였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A주주님 요청 주요 내용(2020년 1월 22일)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아래 기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

1.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원장 등 일체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2. 회사의 답변 내용 (2020년 2월 4일)

- 회계장부의 열람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주주님의 보유주식수는 110,700주이며 이는 100분의 3인 127,901주에 미달하며 또한 "이유를 붙인 서면"이 결여되어 있어 상법 제466조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적격한 청구로 판단합니다

3. A주주님의 재 요청 주요 내용(2020년 2월5일)

- 상법 제542조6의 제4항에 의거 1번 요청사항에 대해 재 요청

4. 회사의 재 답변 내용(2020년 2월 11일)

- 제 542 조 6 항에 의하면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청한 문서에는 6 개월동안 보유한 것에 대한 입증이 없고, 상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서면"이 여전히 결여되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한 청구로 판단합니다.